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박상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김성달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양채열 위원장, 전남대 교수 / 박래수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권오인 국장, 오세형 부장, 정호철·박지훈 간사 / 02-3673-2143)
- 제목 : [기자간담회] 금융사등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등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금감원 국민검사 및 분쟁조정 청구·신청인단 모집간담회 등
- 시행 : 2023. 1. 3(화), (기자회견문 20매, #별첨 1~4.)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3일(화) 오전 기자간담회 10:00~10:25, 모집간담회 10:30~12:00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개 요 >

□ 사회자: 경실련 정호철 간사

- 일 시: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오전 <기자간담회 10:00~10:25> 후 <청구·신청인 모집간담회 10:30~12:00>
- 장 소: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오시는 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대 상 자: - 청구·신청인단 참여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피해자
*아래 <모집공고> 또는 #별첨의 청구신청인 자격부터 반드시 확인
- 취재기자
- 진행순서: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2. 자율적 분쟁조정 진행경과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3. 규탄발언 / 박정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청구신청인 외 공동대표)
4. 전문가 소견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5. 취재기자 질의응답 / 참석자 전체
- 장내 정리 및 휴식 -
6. 모집안내 및 청구·신청 방법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7. 청구·신청 관련 질의응답 / 경실련 등
- 주 최: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실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 문 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 766-5623

※ 모집설명회는 개별적인 법률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면작성 작성안내 등 청구·신청 위임사무의 방법·내용·절차는 <https://moaform.com/q/smHdAb>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별첨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고피해자분들과 취재기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 (취지)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 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¹⁾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²⁾를 당한 사고피해자들의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사고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국민검사청구³⁾ 및 분쟁조정신청⁴⁾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 이상을 모집하여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 (배경) 경실련과 피해자 모임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동안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개선과 자율적 분쟁조정을 타진해왔지만, 금융당국과 사고금융회사들은 여전히 그 책임을 사고피해자들에게 뒤집어 씌워 소송으로만 내몰고 있습니다.

○ (자율적 분쟁조정) 지난해 1월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뒤집어 씌게 된 사고피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온라인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70여명의 사고피해자들과 함께 은행·캐피탈·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⁵⁾) 등 다수 사고금융회사들 상대로 자율적 분쟁조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많은 사고피해자분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자율적인 구제 노력 덕분에, 구글페이 등으로부터 최근(2022. 12월) 일괄 환급조치를 받는 등 피해구제 방지에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적반하장) 그러나 여전히 거액의 이체사고를 낸 시중은행과 대출사고를 낸 캐피탈 등 대부분의 사고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사고피해자들에게 신분증 사본 유출 등의 과실책임을 물어 피해구제⁶⁾를 거절하고, 오히려 사고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징구하며 피해구제 등을 조건으로 한 비채변제⁷⁾를 유도하는 등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불법추심⁸⁾을 일삼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 **(위법행위)** 결국 보다못해, 지난해 7월경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고발대회(<http://ccej.or.kr/79773>)>를 열고 사고금융사들의 실태·수법·하자를 직접 폭로하였습니다. 전 금융업계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타인에 의해 제출된 엉터리 위·변조 신분증 사본에 대해,

- ① 본인확인지정기관⁹)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예: 5대 시중은행, 카카오·토스뱅크, 금융결제원 등)¹⁰)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처리 비용이 아까워서 행정당국이 마련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원장DB 서버인증)¹¹’ 절차를 생략하고, 신분증이 아닌 휴대전화만을 기준으로 ‘신원의 진위여부¹²’를 ‘독립적인 방법(즉, 중복되지 않은 전자금융실명거래 지시권한 확인 방법)¹³’으로서 전자문서¹⁴)를 교차검증하지 않고 관련 신원확인(실명확인)¹⁵) 정보를 엉터리로 허위 식별처리¹⁶)함에 따라,
- ② 비대면 실명확인 능력이 없는 나머지 여신·저축·보험·증권사 등 영세금융사들 또한 경쟁적으로 신규거래를 늘리고자 본인확인조치 시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나 선불폰, 대포폰 등을 불법적으로 동원해¹⁷) 연계 정보를 처리¹⁸)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적법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전락한 오픈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의 비대면 실명확인 사고에서 비롯된 각종 대출사고나, 계좌이체·해지 등의 전액 출금사고를 낸 시중은행 등 사고금융기관들의 업무상 공동불법행위를 언론*에 알리고 이를 시정토록 신속한 피해구제와 함께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http://ccej.or.kr/80892>).

*대통령 계좌도 신분증 사본 하나면 탈린다. 주간경향 2022.10.3. <https://weekly.khan.kr/C1x2>

*[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주간경향 2022.10.3. <https://weekly.khan.kr/1L2c>

○ **(위법책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고금융기관들의 본인확인 방법의 위반과 확인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사실상 그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https://www.fsc.go.kr/no010101/78643>)했고, 엉터리 사본인증 사고를 친 하나·국민은행 역시 최근에서야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뒤늦게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업무상 위법행위가 면책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사고를 찼던 금융회사등의 특별법상 ‘피해 방지 책임¹⁹’에 따른 배상책임이나, 실명확인업무 위탁관계에 따른 연대책임²⁰, 외에도 오류정정 거부 등에 따른 6개월 내 업무 정지²¹)와 같은 사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체 묵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²²’ 안에서 이용자의 책임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무과실책임²³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규제의 책임에 따라 사고금융기관들이 “손해배상”을 해야함에는 틀림 없습니다.

- **(안전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전 재산을 잃거나 부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더라도, 여전히 대다수 사고금융회사등은 사전에 이상거래탐지(Fraud Detection)나 오류정정²⁴은커녕 사고피해자에게 전자금융사기 책임을 전부 뒤집어씌우고, 정당한 피해금 환급이나 채권소멸²⁵을 거부한 채, 압류²⁶ 등을 빌미로 만기전 채무만을 독촉하고, 피해구제⁶나 지급정지²⁷ 등을 조건으로 한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²⁸’만을 일삼으며 부당이득만 편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증 사본 하나만 자칫 잘못 유출되어도 국민들 누구나 저런 엉터리 사고금융기관들로부터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감독당국이 금융사고의 피해와 불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이복현 원장님, 저 엉터리 신분증 사본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하게 전 재산을 잃고 채무를 떠안도록 전 국민을 잠재적 사고피해자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저런 엉터리 사고금융기관들에게 자율규제의 책임을 묻고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사고피해자들을 보호할 때입니다.**

- **(목적)** 하지만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약속했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과 사고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 이상을 공개 모집하여 법적조치에 나섭니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와 청구·신청인단의 집단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사고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청구·신청을 대리합니다. 전자금융사기로 비롯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를 낸 사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각종 대출사고를 당한 청구·신청인단의 채무무존재확인, ▲관련 담보사고로 처분된 각종 금융자산(예: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증권)반환, ▲계좌이체·해지 사고를 당한 청구·신청인단의 예금반환, ▲플랫폼 연계(가상) 계좌·카드·휴대폰결제 등 전자지급거래사고에 대한 추심이체 출금취소,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반환 등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예정입니다.
- **(요건·방법)** 관련 사고들에 대해 모집공고와 같이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금융감독원의 미흡한 민원(분쟁조정)처리 결과에 대해 재조정을 희망하는 피해 당사자라면, 2023년 1월 31일까지 청구·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finance2@ccej.or.kr)과 함께 온라인 폼(<https://moaform.com/q/smHdAb>)을 통해 접수하시면 우리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청구·신청인단을 구성해 공동대응 하겠습니다.

■ **많은 사고피해자들의 참여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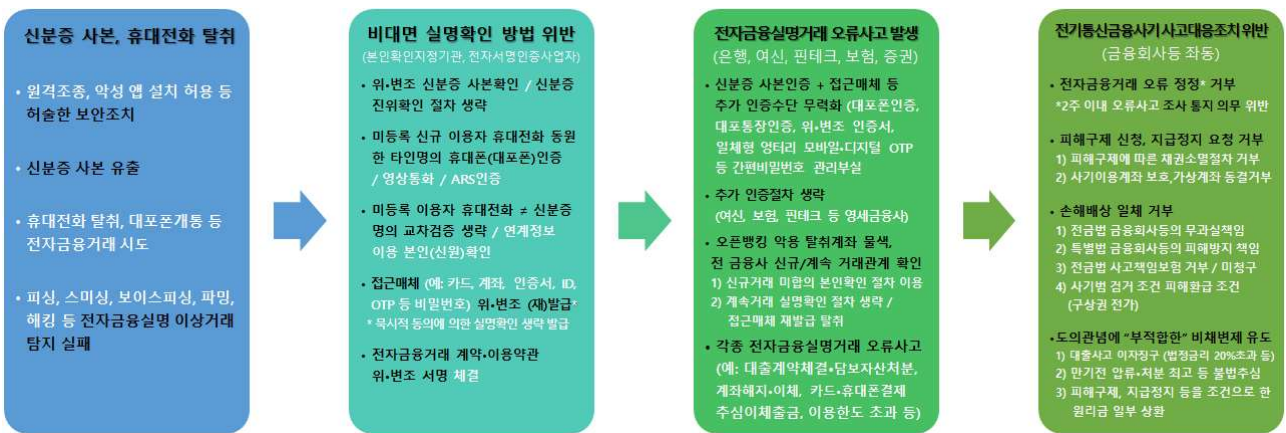
2. 자율적 분쟁조정 진행경과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기간)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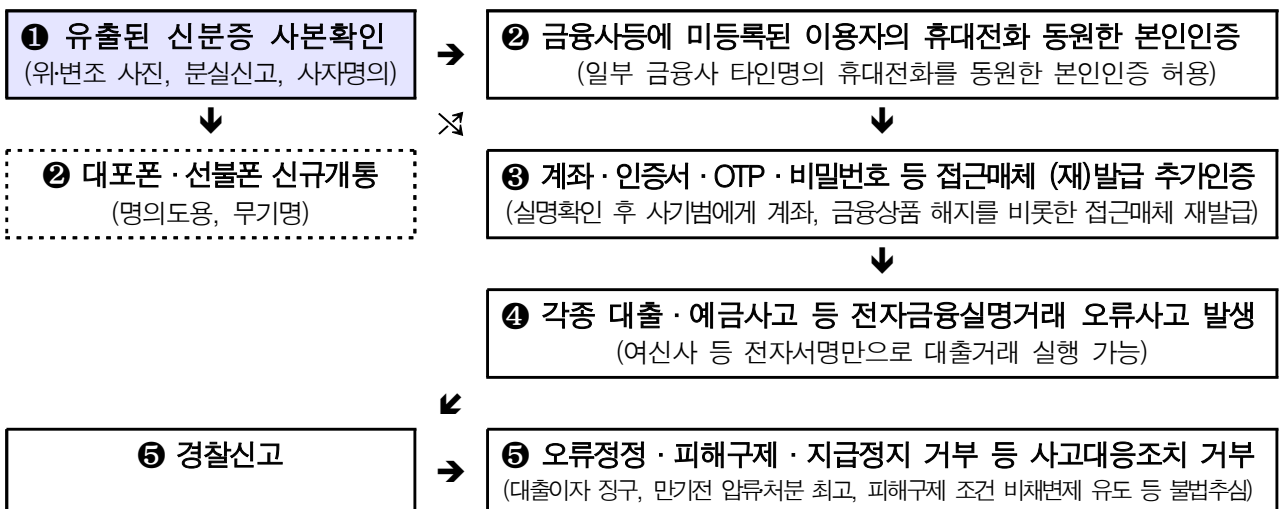
■ (대상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예금·대출사고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고피해자 570여명* 대상 특별법상 금융소비자가 취해야 할 초동조치 상담 등 비공개로 자율적 분쟁조정, 외에도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자문함.

* 대면편취형 전기통신금융사기(기망을 당한 피해자들이 금융사에 직접 대출신청, 이체거래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지시한 경우) 제외

■ 사고경위



○ (사고원인) 신분증 사본인증 등 실명확인 방법의 위반에 기초한 본인확인 절차의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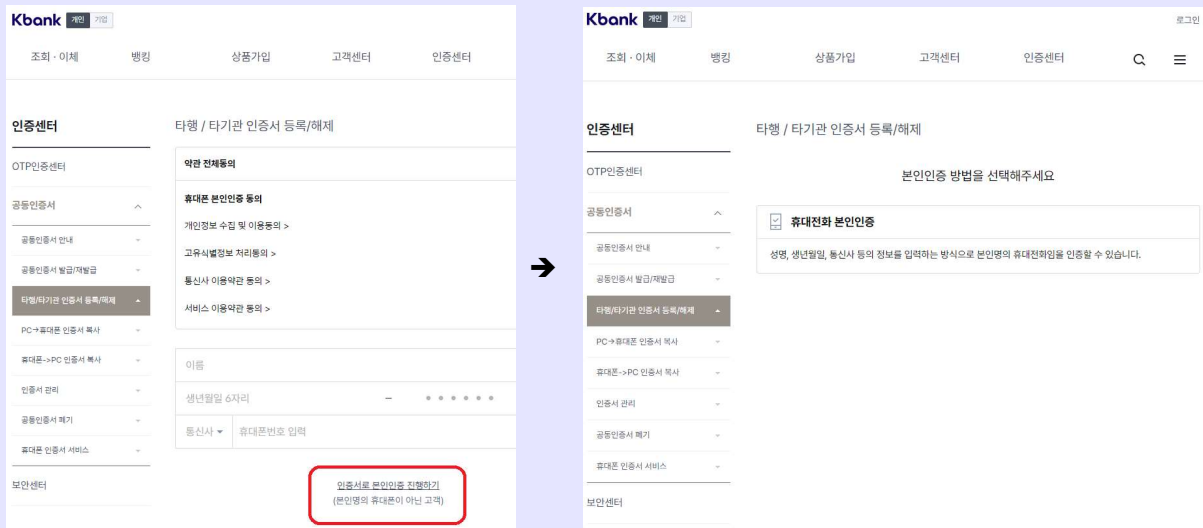
[☺사례3] 카카오뱅크, 대출계약 건 실명확인 전수 육안조사 및 사고보험금 청구

경실련 고발대회 이후, 대출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출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수 육안조사를 통해 실명확인하고, 대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한도 내에서 가급적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고피해자의 대출금 면제 및 손실을 보전토록 조치

☑ (사고보험금)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고보험 등이 있으므로, 사고금융사 측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토록 민원상담

[☺사례4] 케이뱅크, 타인명의 휴대폰인증 폐기 및 인증시스템 개선

경실련 논평 이후, 타인명으로 휴대폰인증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했던 것을 불가능하게 개선하고 바이오인증을 추가 도입



☑ (실지명의 기준 신원확인 방법) 금융결제원을 비롯 대부분의 영세 금융사들이 실명확인 정보와 교차검증하여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위반행위

- (전 금융권) ▲신분증 사본인증 및 진위확인 절차·시스템 부재, ▲동일한 또는 유추가능한 비밀번호 미통제
- (공동인증 참가기관) 신원확인절차 미준수: ▲금융사 미등록 신규 이용자의 휴대전화·ARS 또는 타인명의 휴대폰인증을 동원한 본인확인조치, ▲접근매체 (재)발급 시 신분증 확인절차 생략(묵시적 동의) 또는 신분증 대체확인

■ 이용자의 고의·과실여부

- (선의·무과실) ① 명의대여 또는 타인과의 대리관계가 없음 (☞ 법인·미성년자 제외한 개인의 경우 금융거래시 법정대리 불가능). 대부분의 경우 명의자의 지배·관리 하에 신분증 실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예금사고나 대출사고를 당함. ② 일부 사례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사본, 분실신고한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오류사고가 발생됨. 물론, ③ 해킹·스미싱·원격조종 등 원인불명으로 신분증 사본과 비밀번호 등의 각종 접근매체 유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적지 않았음.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접근매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즉, 양도·담보·누설·노출·방치)'에 해당되지 않음 (☞ 이를 원인으로 한 이용자 책임부담 약정은 불법·무효 혹은 부존재). 오히려, ④ 오류사고를 인지하고서 3일 이내 신속히 경찰신고,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타인의 거래지시에 따른 오류사고임을 사고금융회사등에게 통지하도록 안내·조치함.¹⁸⁾ ⑤ 신분증 사본인증을 비롯한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인적불상자의 발급 신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위·변조한 명의자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이를 고의로 방치했던 사실이 없고, 명의자 본인을 위한 대리인의 전자금융실명거래로 추단케하거나 착오케할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음.

- ☞ ▲전자금융거래를 단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합의한 확인절차가 없는 경우, ▲전자서명에 가입했던 사실이 없는 경우라도 신분증 사본인증(즉, “만능열쇠”)만으로도 휴대전화 명의도 가릴 것 없이 무차별 금융사고가 발생.

※ 실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타인명의 휴대전화로 비실명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했던 금융기관(예: 케이뱅크, 금융결제원 등) 및 휴대전화를 악용한 비실명 전자서명인증서만으로도 본인확인 및 신규대출이 가능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때문에

- ☞ 사기·강박을 당해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를 낸 금융기관, 사고금융회사등의 오류사고로 이익침해를 당한 사고피해자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원만한 합의에 따라 문제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자세 중요

3. 규탄발언 / 박정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청구·신청인 외)

지난해 고발대회 땀 저희 가족의 피해사례 발표로 참가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고피해자 모임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것도, 결국 사고금융회사들의 횡포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가족들을 비롯한 같은 사고피해자분들의 권리구제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싸움이었고, 저희들의 투쟁기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위법책임을 입증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집단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실련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인 570여명의 사고피해자들과 함께 자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정부, 언론, 국회에 신분증 사본인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호소해 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일부는 대출금리 폭증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채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피해자분들도 적지 않았고, 저희 가족들을 비롯한 일부는 5대 은행 등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개별소송이나, 구글페이 등 일부 금융사들로부터 피해금 환급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누적된 피해사례와 투쟁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구·신청인단을 공개모집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사고피해자분들이 참여하시어 꼭 집단 권리구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집단 분쟁조정 의 뜻을 올리게 된 시점에서, 그간 제가 겪은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태도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 명의 금융 소비자로서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금융사고가 부조리함을 넘어 매우 서글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의 절반 이상이 특별법상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비롯한 금융실명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고금융기관들의 신분증 사본인증 등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사고에서 비롯된 금융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경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고발대회>를 통해서도 폭로했던 바, 시중은행들의 모바일

뱅킹으로 실험해 본 결과 △프린터로 출력한 신분증 사본, △위·변조된 신분증 사진(사본), 심지어는 △이미 분실신고된 신분증 사본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타인의 예금계좌를 탈취하거나 타인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이의제기 하였고 사고금융사들의 잘못이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한 편이 돼 신분증 사본을 도용당한 사고피해자들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으로 떠넘기고 소송으로만 내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도 유독 그 책임에 대해서만 끝까지 모른척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이미 터져버린 금융사고가 가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출된 비대면 신분증 사본으로 인해 발생한 전자금융사기는 사기사건이 아니라 금융사고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시 ①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 원본(실물)을 촬영토록 해야 하는데, 유출된 신분증 사본은 물론, 위·변조된 영터리 신분증 사진(사진) 역시 전부 그냥 무사통과됩니다. 그 이후 ② 영상통화나 ARS 본인확인 절차도 사전에 금융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나 휴대폰이 아니면 특별법 위반입니다. 달리 말해, 비대면 신규거래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금융회사에게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접근매체의 전달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하나면 모바일·디지털 OTP 등 모든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는 것 역시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④ 계좌인증 절차도 기존에 개설된 계좌에 금융사가 1원 타행이체로 보낸 인증코드를 통해 본인확인토록 조치하고 하고있지만, 신분증 사본 하나면 결국 손쉽게 계좌비밀번호 변경해 편법적인 계좌비밀번호 인증 외에도, 비대면 신규개설된 계좌인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휴대전화와 분리된 ⑤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 역시 휴대전화 해킹·원격조종이나 해외 출입국 과정에서 유출된 생체정보로 인해 보안이 뚫린 사례들도 없지 않습니다. ⑥ 타 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 (재)발급이나 통신사의 휴대폰인증 역시 신분증 사본 하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타 ⑦ 고객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지금 말씀드린 총 7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들이 가이드라인(고시)에서 규정하는 본인확인조치 방법들인데요. 여기서 마지막 ⑥~⑦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반드시 ①~⑤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추가 인증토록 이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신분증 사본인증을 비롯한 어느 하나의 본인확인 방법을 위반하면, 당연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고, 이용자와의 합의한 확인절차 역시 절차의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가 됩니다.

비록 구 공인인증서 시절에는 최초 신규거래 시 최소 한 번만큼은 직접 대면 하여 신분증 원본대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직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순수 비대면, 즉 블록체인 방식의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당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영상통화가 어렵다고 보니 이를 생략하고 합리화시켰지만, 그 이후 인증 시장에서 AI 안면인식 기술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설비투자나 기술도입 비용을 아끼고자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대면거래와 달리 정보통신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전략한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을 통한 실명확인이나 공동인증서비스를 통해 위·변조된 신분증 사본이 통과됨으로써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터리 신분증 사본인증 후에 이어지는 대포폰 인증, 대포통장인증, 접근매체 위·변조 (재)발급, 소액 다수의 무기명거래 역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사별 허술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악용한 중국 내 보이스포싱 조직이나 사기범들이 유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받아 명의자 행세를 하고, 이에 금융사들은 대리인의 금융거래를 핑계 삼거나 또는 민법상 표현대리, 이용자의 과실책임으로 모두 떠넘겨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구 공인인증서 시절 대법원 판례가 마치 “인감증명”마냥 공인인증서의 절대적 효력과 이용자의 관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에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이후에 더 이상 똑같은 오류사고가 터져도 이러한 법리는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대법원 판례만을 믿고 오류정정,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의 적법한 사고대응조치를 거절한 채,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한 채무를 지게 된 사고피해자들에게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립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신분증은 “만능열쇠(마스터 키)”와도 같습니다. 물론, 신분증 원본을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방지에 있어서 신분증 사본이 통과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꾼들은 원격조종이나 메신저 피싱 등으로 국민들의 신분증 사본을 노리고 있습니다. 설사, 원격조종이나 피싱 등으로 인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됐다고 해도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없으면 추가 인증절차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라도 결국 신분증 사본 하나면 추가 인증절차를 무력화시키고 30분 이내에 뚫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하나면 결국 예금사고나 대출사고는 시간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분증 원본을 확인토록 하는 게 당연한 관례이고 사회상규에 맞는 일반 상식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몇 개든지, 누구든지 쉽게 복제할 수 있으니깐요.

지난해 9월말 정부의 전기통신방지 금융대책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신사 등 영세금융사들의 경우 최소한의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는 미등록 신규 이용자의 휴대전화 기준으로 발급된 타 기관의 모바일인증서만으로 실명을 대체확인

해 왔습니다. 금융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신분증 사본만을 확인한 금융사들에게 중대한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이용자에게 크고 작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금융사들이 신분증만 제대로 확인했었다면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금융업계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제공하고 있는 전자금융실명거래 시스템은 그 하자로 인해 관련법상 과실이 없는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 하나만 타인에게 자칫 잘못 유출되어도 국민들 누구나 언제든지 잠재적인 사고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법행위와 침해사고를 저지른 사고금융사들은 단 한 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은행 창구직원들이나 금융사 임원들조차 신분증 원본으로 모바일뱅킹이 작동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본을 전송했는데 어떻게 실명확인이 돼서 OTP가 발급될 수 있느냐? 은행 앱은 원본이 있어야 인증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한 금융사 임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바일뱅킹 실명확인 시 제공되는 카메라 어플로만 직접 촬영해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신분증 실물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은행창구에 문의해 보니 역시 똑같은 대답을 들었고, 금융위 은행과에서도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험을 통해 입증된 신분증 인쇄본(사본)이나, 휴대전화 화면에 띄운 2차 사본, 심지어는 위·변조된 영터리 신분증 사진이나 분실신고된 신분증 사본까지 통과되는 것으로 판명 나더니 계속 말이 바뀝니다.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 중이다 ... 방법적으로 좀 어렵다 (3D 두께를 측정하거나, 신분증 실물 들고 영상촬영이나 사진을 찍는 법 등등 해외에서는 이미 방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도) ... 기술적으로 고도의 OCR 해상도나 고도의 인식기술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원본인식 기술이나 고해상도의 3D 카메라가 이미 보급됐는데도) ... 사기범의 테크닉(수법)이 교묘하다 등등 ... 전부 다 헛소리로 판명되니깐 이제 그냥 사본을 찍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잡아떼고 있습니다. 금융위 담당자가 바뀌니깐 이제는 신분증 사본도 된다고 그렇고, 억울하면 금감원 조사역을 고발하라며 막말까지 쏟아냅니다.

결국,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본 촬영은 비정상이라고 답하자, 어느 금감원 조사역은 원장님 대답은 유권해석이 아니라면서 일축해버리고, 다시 어느 국회의원실을 통해 금융위에 질의하니 “술을 살 때도 신분증 원본을 보지 않냐?”면서 또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사에게 잘못은 있지만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다. ... 처벌조항이 애매하다.”라며 양해를 바라는 듯한 민원회신을 하는 등

실명확인 금융사고를 다시 무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이 정도 달라진 것만 해도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제재가 뭐가 그리 어려울까요? 적법한 시정조치와 사후 행정처분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수많은 사고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못하는 게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사고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깐 아마 난감하기도 할 겁니다. 금융당국 역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관리감독 못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테니깐요. 그동안 제가 녹취한 증거자료만 수십 개입니다. 또 우리 사고피해자들이 녹취한 증거자료도 셀 수도 없습니다. 사고금융회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까지 모두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까지 인정한 마당에,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이젠 사고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중지부를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작년 초부터 저희 사고피해자 모임을 비롯한 다른 사고피해자들 역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 하나 둘씩 사고금융사들을 상대로 승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대법원까지 붙어보자, 감독당국은 여전히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고피해자에게 고금리 변제로 압박해 대는 다수 사고금융사들을 상대로 감히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못 내고 그냥 갚아 버리거나 빚더미에 주저앉고 마는 형국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들의 위법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니깐요.

하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구 공인인증서 시절이 아닙니다. 현행 사설인증서는 신원의 동일성이 당연 추정되지 않고, 그 발급경위부터 따지게 됩니다. 최근 승소판례들은 금융사에게 명시적 과실이 없더라도 이용자의 과실이 크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과실이 제법 커도 금융 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의 간소화의 위험성은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 또한 나옵니다. 전자문서법 제7조에 따라 금융사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본인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본인으로 추정할만한 정당한 이유 있었는지, 금융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 따지고 민법상의 표현대리로 금융사가 오해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관련 법에 따라 최근 판례들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고시를 준수한 기준을 적법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기초로 합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접근매체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 책임이 있어서 관련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토록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책임을 추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고피해자들 경우 이러한 중과실이 없습니다. 단지, 신분증 사본 하나 유출

됐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부당한 채무를 지게된 금융사고 피해자들입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이 극히 제한되고, 명백히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사고금융사들에게 신분증 사본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위반한 절차의 중대한 하자과 중과실 책임이 있는데, 신분증 원본/사본확인의 단순한 문제로 감독당국이 사법부 판단만을 기다리며 눈치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법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금융사들을 제발 감독해 주십시오. 이미 정부에서도 영터리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도 나름 내놨습니다. 윤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금융사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단이 금융회사등의 위법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고 그 허점을 사기범들이 여전히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한 금융당국 역시 사고금융사들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메신저 피싱 중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과 관련된 확인사고는 5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증기술이 없어서 똑같은 오류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증시스템 개선에 아무리 천문학적 비용이 들더라도 금융실명거래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싫어서 오류사고가 터지면 사고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자율규제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자금융사기가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판치고만 있는데 사고금융사들의 영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를 감추고자 사고피해자들에게 전자금융사기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합리화만 시키고 전 국민을 또 잠재적 사고피해자로 내몰고만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고피해자들이 자책을 멈추고 금전적, 정신적 상처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우리 금융소비자들은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섭니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와 집단분쟁조정이 정부와 금융사의 자율적인 양심을 판단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싸늘했던 현실을 직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애써주신 경실련과 온라인 모임 운영영진으로 자원봉사해 주시는 같은 사고피해자분들께 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많은 사고피해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4. 전문가 소견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전자금융사고와 금융감독기구의 직무유기

소위 핀테크 기업들이 마치 시대의 혁신을 이끌고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줄 것처럼, 또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이 전 세계에게 압도적이면서도 선도적인 핀테크 기업을 배출해 낼 것만 같은 허황된 이야기들이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에서 핀테크기업들은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상 이러한 피해의 수준과 내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명의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까지,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용인증서(공동인증서) 무단발급에 따른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휴대폰인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인증절차에 의한 전자금융사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 개인이 실수로, 또는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갑자기 도용당할 수 있다.

관련 법규들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기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이 그 불확실성은 소비자들에게 위협으로 전가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그 위협을 인지하고 작년 9. 29.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즉, 금융감독기구는 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비대면 본인확인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관련 판단을 했다. “대학교수의 얼굴사진을 다운 받아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약 3억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은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에 비해 제3자에 의하여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등의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 역시 쉽게 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핸드폰인증을 보완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위조한 운전면허증, 임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판결), 또한 “피해자명의로 인증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3,500만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도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6087 판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관련법이 존재함에도,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 법에 근거한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조차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금융감독기구는 지금이라도 자기 일을 해야 한다.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그 절차상 위법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 법령시스템 내에서도 위험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금융감독기구의 이러한 방치가 이 위험을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끝/.

2023년 1월 3일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구신청인단 신분증 시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 참조조문등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8호 “오류” 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嚇)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3)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당사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104>).
- 4) 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의 하나입니다(<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642>).
- 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 6) 특별법 제3조 △제1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7) 민법 제742조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9)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호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방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 본인확인기관 현황('22.11).
URL: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7030100&dc=K07030100&boardId=1015&boardSeq=51876>

< 본인확인기관 지정 현황 >

2022.11.

구분	본인확인기관	지정연도
아이핀(3社)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2011년
휴대폰(3社)	SKT, KT, LG유플러스	2013년
신용카드(8社)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카드사	2018년
	농협은행	2019년
인증서(10社)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2020년
	한국무역정보통신, 비바리퍼블리카(토스)	2021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2022년

- 10)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제도(전자서명법 제9조). URL: <https://www.kisa.or.kr/1040701>

인정번호	업체명	인정범위	유효기간
제 2021-001호	엔에이치엔페이코(주)	PAYCO 인증서비스	2022년 08월 26일 ~ 2023년 08월 25일
제 2021-002호	(주)신한은행	신한인증서	2022년 09월 15일 ~ 2023년 9월 14일
제 2021-003호	네이버(주)	네이버 인증서 서비스	2022년 09월 17일 ~ 2023년 09월 16일
제 2021-004호	(주)국민은행	KB국민인증서 서비스	2022년 10월 14일 ~ 2023년 10월 13일
제 2021-005호	금융결제원	YesKey 인증서 서비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2022년 10월 21일 ~ 2023년 10월 20일
제 2021-006호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공동인증서서비스	2022년 11월 04일 ~ 2023년 11월 03일
제 2021-007호	(주)비바리퍼블리카	토스 인증서	2021년 11월 11일 ~ 2022년 11월 10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08호	주식회사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 인증서	2022년 11월 11일 ~ 2023년 11월 10일

제 2021-009호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 인증서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11월 21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0호	주식회사 코스콤	코스콤 SignKorea 인증서비스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11월 21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1호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	공동인증서	2021년 11월 26일 ~ 2022년 11월 25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2호	(주)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 인증서비스(공동인증서)	2021년 12월 07일 ~ 2022년 12월 06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3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29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4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SK텔레콤 PASS 인증서 서비스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29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5호	(주)케이티	KT PASS 인증서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29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1-016호	(주)한국정보인증	S-PASS인증서비스	2021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29일 ※ 평가·인정절차 진행중
제 2022-001호	(주)드림시큐리티	드림인증 전자서명 서비스	2022년 02월 08일 ~ 2023년 02월 07일
제 2022-002호	NH농협컨소시엄	NH모바일인증서	2022년 08월 17일 ~ 2023년 08월 16일

- 1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3호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2008. 8. 22. 전부개정 및 [2014. 3. 17. 시행; 경찰청 2014. 12. 30. 신설](#) 및 [2015. 7. 시행; 외교부 2018. 12. 24. 신설](#) 및 [2020. 12. 21. 시행; 금융위원회 등 정부합동 2015. 5. 18. 공고, 2015. 12. 22. 고시, 2016. 5. 26. 공고, 2016. 10. 14. 시행, 2017. 1. 17. 시행, 2018. 12. 18. 종합대책, 2020. 1. 1. 고시, 2020. 6. 24. 종합대책, 2020. 7. 27. 공고, 2020. 12. 10. 공고, 2021. 2. 3. 종합대책, 2022. 9. 29. 종합대책](#) 등 직접참조).
- 1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제1항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제1호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금융실명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동조 제2항의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친 뒤에 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를 제공받아 본인확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3)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2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 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15)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 으로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의 경우 명의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 또는 제출된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사전에 동의를 받아 연계정보(**「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를 처리할 수 있다.
- 16) **전자서명법 제13조** △제1항 인정기관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운영 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해당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7)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전자금융거래, 오픈뱅킹 실명확인 연계정보처리 동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내지 ▲제2호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위 6)의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전제로 한 ▲제3호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실지명의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신규거래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타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오픈뱅킹 등의 금융공동망을 통해 연계정보를 받아 본인확인조치를 하여 신규거래(특히, 비대면 신규 대출계약)를 체결한 경우에는 미등록 이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전에 등록하거나 연계정보처리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 업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 1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4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19)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1호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2호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 보험·공제 금융상품(시행령 제2조의3 제4항 제1호)' 이나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동조 제4항 제2호)' 을 해지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1호), ▲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2호), ▲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동조 제1항 제3호)' 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0)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 △제3항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 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제2호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제3호 3자가 관련 법규(다만,

제3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제4호 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5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를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항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금융관련법령 및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항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21)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1항·제2항,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급)**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항, 제21조 제1항·제2항, **제21조의5(침해사과의 통지 등)** 제2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호 **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제3호 **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39조** 제6항,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2항 또는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제4호 **법 제30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이용자가 접근매체 **(법 제2조 제10호 가목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목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단, **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제2호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호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가목의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또는 나목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3항에 따라 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서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개인을 상대로 책임부담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동조 제2항 제1호) 또는 ▲소기업을 제외한 중대기업 법인을 상대로 사고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하여 준수하고 대리권의 확인(「**금융거래 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 확인을 위한 지침**」 제5조) 등에 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동조 제2항 제2호)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본인 및 대리권의 확인에 관하여 일반인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5259844 판결 등 참조).
- 2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제2호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 제10조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시행령 제9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등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화·전자우편·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금융회사등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화·전자우편·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5) **특별법 제5조** 제1항 금융회사는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특별법 제4조** 제1항의 ▲제1호 피해구제 신청(**특별법 제3조** 제1항) 또는 지급정지 요청(동조 제2항)이 있는 경우,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특별법 제2조의5** 제2항)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6) **특별법 제4조의2** △제1항 누구든지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제1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제2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제3호 국제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제4호 질권(質權)의 설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 27)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 **특별법 제2조의5** 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항 금융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8) **민법 제744조**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행자[금융기관등]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금융기관등]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때” 에는 지급자(피해자)가 비채변제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판시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